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익명적(anonymous)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구교태(계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서론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 참여공간이자 다양한 토론을 통한 여론이 형성되는 공간이다. 다양한 의견이 만나 충돌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는 개방된 공간이기도 하다.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상의 자유시장이론(marketplace of idea)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강력한 보호를 지지하고 있다(Reno v. ACLU, 521 U.S. at 870). 볼킨(Balkin, 2004)은 네 가지 측면에서 인터넷의 민주적 문화 실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정보의 복사와 유통 비용이 대폭 줄었으며, 둘째 유통의 문화·지리적 경계가 사라졌으며, 셋째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이에 대한 논평 비용이 줄었으며, 넷째 위의 세 가지로 인하여 표현(speech)이 민주화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집단의 다원화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토플러의 모자이크 민주주의(mosaic democracy)의 가능성을 더욱 현실적으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자유로운 토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토론이나 게시판의 여론형성과정을 평가한 논의는 대체로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박성희·박은미, 2007).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적 표현은 합리성에 기초하여 합의를 모색하는 여론형성 공간이기보다는 개인적, 집단적 의견이 무분별하게 분출하는 갈등 매개적 공간이라는 지적도 있다(김은미, 이준웅, 2006). 이성적 토론과 합의보다는 끊임없는 논쟁을 보이기도 하며, 극단적 의견에 따른 활동 공간의 경계가 더욱 뚜렷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인터넷 공간에서 보여준 부정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해 정부는 개인화된 매체의 특수성보다는 공적 매체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규제 정책을 만들어왔다. 온라인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규제중의 하나는 오랜 논란이 되어온 실명제 관련 규정일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참여 전제 조건이라 규정될 수 있는 실명제는 개인 저널리즘(personal journalism)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치 담론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제도라 지적되기기 때문이다(문재완, 2005; 조소영, 2007; 황성기, 2008).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기된 소송들에서 승리하기

위해 취재원보호권(shield law)을 인정한 법률을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익명적 발언의 가치를 가늠하는 비교형량기준 (Balancing tes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왔다. 나아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트래픽 분석이나 네트워크 감시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www.torproject.org).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2004년 3월이었다. 인터넷에서 실명확인을 통한 정치적 의견피력을 법률로 정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5년 ‘연예인 X파일 사건’등을 계기로 다시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침해적 역기능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규제 대상은 정치적 내용에서 일반적 내용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 실명제 시행 의무를 가진 사업자들은 인터넷언론사에 머물렀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본인 확인은 일반 웹사이트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명제를 위한 명분과 적용대상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법제도가 가져올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과 그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의 논란 대상인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을 규제하는 법안이 현재 어떻게 규정 혹은 집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률적 논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실명제 관련 법률이 실제 인터넷 사용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지는지 2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2. 익명적 커뮤니케이션 제한 법률

개인의 실명확인을 통한 게시판 이용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6은 ‘선거게시판이용 실명확인제’라 지칭될 수 있다(황성기, 2008). 이 법 규정은 본인인증시스템의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표현을 통제되고 있다. 황성기(2008)에 의하면,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는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의 기술적인 실명인증방법을 통해서 본인으로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본인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해 게시된 의견이나 글을 삭제하거나 본인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 의해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조

치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을 규제하는 대표적 법률은 <표 1>에 제시되고 있다. 이 법률은 인터넷에서 허무인, 별명, 가상의 아이디 등을 이용한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실명인증을 통한 본인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을 강제하는 규제라는 것이다.

<표 1> 인터넷 실명제의 내용적 특성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
시행시기	2004. 3. 12. 도입
법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기본 구조	실명확인 후 의견게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의무
실명제 적용 대상	인터넷언론사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
실명제 적용 대상 표현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
실명 확인 방법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 -행정자치부장관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의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의 조치방법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실명인증’표시가 나타나도록 기술적 조치 의무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 지체없이 삭제 의무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 의무
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의 삭제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음 <그림 1>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기간 동안 이뤄지는 실명확인 단계와 시행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이들 절차 가운데 인터넷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는 실명인증확인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다양한 온라인 활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한시키고자 이용자들의 실제적 신분을 밝히지 않는 제도들을 추진해온 행정부의 노력과는 매우 대조적인 양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실명확인 서비스 기간에 임박하여 기술연계 지원요청이 증가할 경우 이용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지연 등이 예상되는 부분도 접근의 평등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 실명확인 서비스가

원할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행자부는 실명인증 관련 자료를 보관하다 중앙선관위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1> 실명확인 절차 및 실명인증확인지원 시스템이 호출된 게시판 화면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356	선거실명 확인 지원 시스템 테스트	NEW	05-09-21	0
355	선거실명 확인 지원 시스템 테스트	NEW	05-09-21	7
353	실명인증에 성공한 경우 '실명인증' 표시와 함께 글이 등록된 모습	박수용	05-09-21	1
352	실명인증에 실패한 경우 '실명인증' 표시가 없이 글이 등록된 모습	오디	05-08-30	25
351	[RE] Xten make를 하게 되면 해러가 납니다.	김기현	05-09-21	1
350	안녕하세요~ SLB와 HASH관련 질문입니다.	Lee	05-08-12	47
349	Alteon184에서 동일 IP로 복수의 Real 서버 구성가능 여부	박대수	05-07-22	53
348	XTEN 검색 솔루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디	05-07-20	28
347	구성문의	김기환	05-07-19	44

출처: http://www.nec.go.kr/popup/vote_realname/html/constituent_pds.html

3.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2003)는 ‘인터넷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freedom of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을 통해 인터넷의 익명성을 지지해 왔다. 이들은 온라인감시로부터의 보호와 정보 및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인터넷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학발전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97)는 인터넷 규제시스템이나 규제 정책들을 설계할 때 온라인에서의 익명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황성기, 2008, 재인용).

먼저 익명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강력한 인권이자 헌법상의 권리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범적 전제로서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2조(사생활의 자유) 및 제19조(표현의 자유),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정책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표현을 하려는 개인이 실명이든 익명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게시판 운영자 또한 운영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자율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원칙들 가운데 하나는 익명성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익명성으로 인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중립적으로 존재하는 원리라는 것이다. 이 원칙을 고려하면, 인터넷상의 일탈행위 내지 역기능의 원인이 익명성에 있고, 이를 제거하면 역기능이 해소될 것이라는 현행 인터넷 실명제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온-오프라인의 장점들 혹은 익명이 필수적인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익명적 커뮤니케이션 관련 장점들은 크게 6가지로 언급될 수 있다(Kling, et al., 1999).

(1) 탐사 저널리즘(Investigative Journalism)

언론인들은 뉴스취재를 위해 빈번하게 익명의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다. 정보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면 익명으로 처리하여 보도하고 있다.

(2) 내부고발(Whistleblowing)

인터넷 이용에 앞서 어떤 조직 구성원이 동료나 상관을 내부 고발하고자 할 경우 익명의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확대되고 추세이다. 미국 보훈처(<http://www.va.gov/oig/contacts/hotline.asp>)나 재무부(<http://www.gao.gov/fraudnet/fraudnet.htm>)는 인터넷에 익명의 핫라인(hotline)을 만들어 놓았다. 예를 들어, 상관 이 뇌물을 받는다고 믿는다면 익명의 이메일 서비스를 활용하여 담당자에게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법 집행(Law Enforcement)

경찰들은 범죄 활동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흔히 익명의 정보원에 의존한다. 사이버공간에서도 범죄 관련 정보를 위해 익명과 보상을 제안함으로써 혐의자를 체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카고 경찰은 마약 관련 활동에 대한 익명인의 정보 제공을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http://www.ci.chi.il.us/CommunityPolicing/FightCrime/Forms/Narcotics.html>). 또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면 익명으로 사거나 기만적으로 보이는 원치 않는 상업적 이메일을 FTC에 제출할 수 있다(uce@ftc.gov).

(4) 자아 보호(Self-Help)

익명은 술, 마약, 가정폭력, 성폭력, 에이즈나 다른 질환, 정신적 및 육체적 질환과 같은 문제를 다룰 때 자아를 보호하기 원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면대면 접촉, 전화 통화, 편지로 도움이나 정보를 구할 경우 불편한 감정들을 가질 수가 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공유하고, 소비하는 경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익명으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최상일 경우도 있다. 특히, 민감한 주제들에 대한 인터넷 토론 그룹의 활성화는 익명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5)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Personal Privacy Protection)

익명 커뮤니케이션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익명은 원하지 않는 광고나 정크 메일을 받는 것이나 쉽게 추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요청할 때 자신의 실명을 감추기 위해 익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여성들은 성차별이나 괴롭힘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성이나 남성적 가명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6) 구속 회피(Avoiding Persecution)

억압적인 정권으로 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의 개인들이 탄압을 회피하기 위해 익명을 사용할 수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인권 남용을 폭로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있다. 익명의 온라인 게시를 통해 보복의 두려움 없이 관련 정보들이 공개될 수 있다.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은 언급된 장점들뿐만 아니라 많은 단점들도 가지고 있다. 이들 단점들은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법적 규제에 논거가 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1) 스팸(Spamming)

엄청난 양의 정크(junk) 메일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보편적인 오용사례일 것이다. 해커들은 사업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해 스팸 메일을 보내기도 한다. 지나친 스팸메일들은 시스템 과부하를 초래함으로써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나 시스템 운영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

(2) 기만(Deception)

익명은 기만을 조장할 수 있다. 1994년 온라인 서비스인 프로디지(Prodigy) 이용자가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한 투자은행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게재하였다. 이용자들은 주장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도 없었으며, 증거를 위해 정보 제공자도 접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은 해당 기업의 주가치를 떨어뜨리고 금융 사업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뉴스그룹에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기만적인 글을 올려 모금운동을 한 후 사라짐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분노, 의심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Grady, 1998).

(3) 기타 불법 활동(Other illegal activities)

인터넷에서 사기를 위해 가상의 사이트를 구축하여, 상품이나 정보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기(Online financial fraud)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메시지들은 주로 익명을 통해서 보내진다. 다른 사람을 사칭한 혐오성 메일(Hate Mail)을 통해 악성 루머를 전달시킨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수 있다. 익명이나 필명을 조장하는 기술적 도움을 통해, 자금세탁, 불법무기거래, 마약거래, 범죄 집단의 조직원 모집, 지적 재산권 위반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의 장단점들을 통해 이에 대한 논쟁은 책임성의 문제에서부터 법

집행의 문제에까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익명성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익명은 음모론 확산을 부추기거나 금융사기를 조장하거나 타인을 성적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지만, 익명성이 더욱 공정하거나 유용한 평가를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Antonioni, 1994). 평가과정에 대한 안토니오(Antonioni)의 연구에 의하면, 익명보다 실명의 경우 사람들은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익명일 때 사람들은 더욱 솔직하거나 유용한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실에서 익명은 방패(shield)와 창(sword)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법률은 때때로 개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패로서 익명을 보호하거나 조장하기도 한다(목격자 보호 프로그램). 그러나 익명은 불법적인 활동을 조장하는 창(sword)이 되는 경우 법률은 이를 규제하려고 한다. 따라서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헌법적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시각이 바람직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보다 오랫동안 논쟁되었던 미국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분석하고자 하였다.

4.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의 헌법적 고찰

미국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은 가장 높은 헌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즉, 가십성 내용보다 정치적 표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자발적 유권자들의 소통공간인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소통의 실종’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선관위가 인터넷 댓글과 패러디, UCC 등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금지(선거법 93조) 등의 이유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익명으로 남고자 하는 저자의 결정이 수정 헌법 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n. 재판에서 연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전단지를 통한 익명의 의사표현은 해롭거나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동의와 반대를 표하는 전통이다. 익명은 독재자로부터 방패역할을 하는 것이다. 억압적 사회에서 보복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억압으로부터 사상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과 수정헌법 1조의 목적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n.).

McIntyre v. Ohio Elections Commn. 사건을 담당했던 스티븐스(Stevens)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익명표현의 동기가 사회적 추방(social ostracism)을 막고, 복수(retaliation)

를 방지하며, 사생활(privacy)을 보하는데 있으며,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발언자의 신원도 자유로이 넣거나 뺄 수 있는 메시지의 내용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Dendrite v. Doe 사건에서, 미국은 익명의 인터넷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을 확립해왔다. 먼저 원고는 이용자에게 소환에 대한 경고를 하여야 하고, 자신의 주장이 법적으로 지지할만하고 타당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원고는 주장된 명예훼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정은 익명 표현에 대한 수정헌법 1조의 권리와 원고의 주장을 비교형량(balancing test)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익은 중요하고 절박(compelling)하여야 하며,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necessary)하여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문재완, 2005).

온라인에서의 익명적 발언은 오프라인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규제정책과 더불어 논의되어 왔다. 온라인에서의 익명 발언은 온오프라인 활동과 비교할 때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첫째, 대량 확산을 지적할 수 있다. 인터넷은 전통적 매체에 비해 더 쉽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속성(persistence)을 언급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전자적 메시지는 여러 장소에서 기대하는 이상으로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용자가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익명성 남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전화교환수가 메시지 발신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통신을 제한해야 한다거나 우체부가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제시되지 않으면 우편 발송을 못한다는 주장과 유사한 점이 있다. 현실에서 익명인도 출판사나 인쇄소를 이용하여 전단지나 인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미디어에 의한 사기나 기만을 막고자하는 현실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신원 확인과 같은 규제를 하고자하는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의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오프라인에서 금지하지 않는 것을 온라인 공표한다고 범죄시하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은 이미 1996년에 위헌 판결을 받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온라인 언론활동이 수정헌법 1조의 보호아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후에 1998년 미 의회는 어린이온라인보호법(Children Online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어린이들에게 해가되는 내용의 상업적인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상업적인 것과 같은 중요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 성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며, 사전 출판 금지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연방 지방 법원(federal district court)은 위헌 판결을 내렸다(ACLU v. Reno and ACLU v. Ashcroft - CDA and COPA).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매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 중 하나가 익명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온라인의 익명표현은 더욱 자유롭게 수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 또한 오프라인 언론인들처럼 정보원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보도할 권리를 가진다(Apple v. Does). 오프라인 언론 활동에서처럼 인터넷의 익명 정보원은 공중에게 전달되는 내용의 중요한 정보원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인터넷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을 정보원으로 인정하여 취재원보호법 대상으로 대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개인적 언론활동이다. 인터넷 관련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소송은 기존 취재원보호법을 단순히 뉴스취재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신문에 명예 훼손적 표현이 있다고 주장되는 메시지를 게재한 익명의 커뮤니케이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Beard v. The Portland Mercury).

공중에게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어떠한 매체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획득된 공표된 혹은 공표되지 않은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며, Beard v. The Portland Mercury 사건은 이용자의 IP 주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 개인이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뉴스그룹에 게재한 다른 사람들의 진술로 인해 명예훼손 대상은 될 수 없다. 게재된 내용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람은 원 진술자에게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Barrett v. Rosenthal).

미 저작권법 제107조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지 않는 저작물 이용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 이용 목적은 비판(criticism), 비평(comment), 뉴스 보도, 강의(teaching), 학문(scholarship) 또는 연구(research) 등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타인 진술을 활용한 자유로운 표현도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이용자에 대한 정보 보호를 위한 인터넷 정보 사업자들의 노력도 중요해 보인다. 미국에서 구글이나 유튜브는 정보 게재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소환장을 반박하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Manalapan v. Moskovitz, Landmark).

익명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앞서 논의된 많은 소송들을 통해 지지되어 왔다. 또한,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사상 증거제시 절차인 소환장(subpoena)이 발부된 경우, 신원정보를 얻으려는 쪽은 (1)소환장이 부적절한 목적이 아닌 선의(in good faith)로 발부될 것 (2)소환장으로 얻으려는 정보가 주장 내용 중 핵심적일 것 (3)신원정보가 주장하는 바와 직접적이고 상당히 많이(directly and materially) 관련되었을 것 (4)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정보일 것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Doe v. 2TheMart.com). 이러한 설명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사업자나 운영자들은 이용자의 신원확인 요청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이용자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민감한 주제들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 하고자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배척되거나 당혹감을 느끼지 않고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자 할 때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기만적인 정보 전달, 타인의 신분 도용, 기타 부적절한 이용 목적을 금지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이 법에 규정되는 경우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규제로부터 오는 이익보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CLU of Georgia v. Miller). 특히, 판결에서 주목하여야할 것은 화자의 신원은 화자가 자유롭게 포함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는 메시지의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분에 대한 규정은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대한 규제일 수 있다. 물론 국가는 명백한 국가적 이익(compelling state interest)을 얻기 위해서는 내용에 대한 규제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본인 확인을 규정한 조항들은 인터넷 이용자가 부정적 커뮤니케이션을 행할 의도 여부와 관계없는 규제이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결과를 모두 식별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명백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진술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오히려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 흐름을 위축시키는 자아 검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커뮤니케이션되는 내용의 특성에 대해서도 법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이메일은 일시적인 감정을 반영한 메시지이기에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메일이 순간적 걱정이나 의심, 고민 등을 표현할 뿐, 항시적인 생각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메일에 기초한 검찰 수사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로 인해 이메일의 법정 효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조선일보, 11월 14일).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인터넷에 게재된 글 가운데 이용자가 단순한 의견개진을 수행한 다양한 댓글이나 실시간 토론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의가 적용될 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표현의 자유 외에도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황성기(2008)에 의하면, 정부가 홈페이지를 경영 혹은 관리하는 자가 사업경영 및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비회원제방식이나 비실명확인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제한하여 영업 자유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조직이나 온라인 집단들은 참여자의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을 익명 혹은 비익명으로 운영할 권리도 있다는 것이다.

실명제의 적용대상의 범위를 보면, 공선법 제2조 7항이 보여주듯, “... 정치·경제·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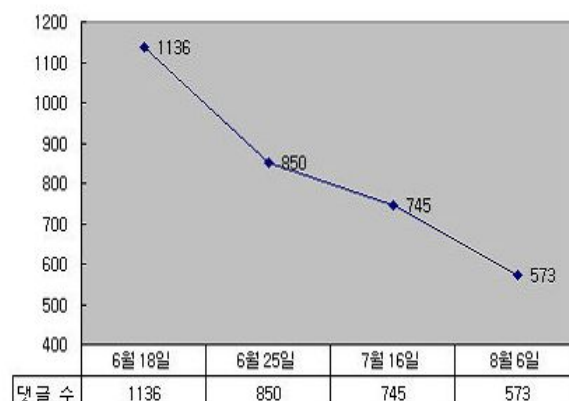
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를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게시판뿐만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 공개된 개인블로그나 카페 등도 포함될 수 있어 규제의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황성기, 2008).

5. 실명제와 온라인 이용현황

실명제가 온라인의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차 자료에 의존하여 실명제 전후의 이용현황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역사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은 특히 가명 혹은 익명으로 이뤄지는 일이 많다(문재완, 2005). 대통령선거를 180일 앞두고 2007년 6월 22일 인터넷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중앙선관위의 단속 방침이 내려진 후 인터넷에서는 정치 관련 댓글이 급속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포털 사이트인 ‘다음’의 뉴스 게시판인 ‘아고라’의 운영 현황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단속 이전인 지난 6월 18일 정치 게시판 게시물 수는 1,136개였으나 단속이 시작된 이후인 25일에는 850개로 25.2%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2> 실명제 실시에 따른 다음 아고라 정치게시판 게시물 추이



출처: 헤럴드경제 2007년 8월 20일

온라인 주민참여는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하거나 접

근하려는 긍정적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터넷의 익명성은 수평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주민참여의 확대를 증대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대한 실명제 도입의 영향을 분석한 이시원과 민병익의 연구(2002)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를 본 연구 특성에 맞게 재구조화하여 실명제 전후의 인터넷 이용현황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먼저, 경상남도 진주시 홈페이지는 1998년 1월 3일 개설되었고 2001년 7월 1일 ‘열린시장실’을 실명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진수지 홈페이지에서 ‘시민토론방’은 여전히 비실명제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이시원과 민병익의 연구(2002)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재구조화하여 실명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과 후의 참여건수와 참여건수당 평균조회건수를 비교함으로써 시민 참여에 대한 실명제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명제 실시에 따른 이용현황을 보여주는 <표 2>에 따르면, 실명제가 실시된 7월을 전후하여 실명공간이 된 ‘열린시장실’의 3개월간 월평균 시민 참여건수는 약 312건에서 137건으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게재된 글 1건당 평균 조회한 횟수는 약 235대 241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회건수에 기초해 볼 때, ‘열린시장실’에 게재된 글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꾸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 참여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을 조회하고자하는 사람들의 수도 그와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해당 인터넷 공간에 참여해서 글을 올리는 행위와 게재된 글을 조회한 활동을 포함한 전체 참가자 수는 3개월간 월평균 약 74,343명에서 33,009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명제가 이뤄진 공간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참여자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 실명제 실시에 따른 경남 진주시 홈페이지 이용현황

구분	시기	실명공간			비실명공간		
		참여건수 (a)	평균조회건수 (b)	전체이용 (axb)	참여건수 (a)	평균조회건수 (b)	전체이용 (axb)
비실명제	4월	230	202	46,460	68	109	7,412
	5월	331	260	86,060	64	117	7,488
	6월	374	242	90,508	34	114	3,876
	평균	311.67	234.67	74,342.67	55.33	113.33	6,258.67
실명제	7월	133	196	26,068	236	48	11,328
	8월	142	259	36,778	184	49	9,016
	9월	135	268	36,180	197	57	11,229
	평균	136.67	241.00	33,008.67	205.67	51.33	10,524.33

출처: 이시원·민병익 (2002). p. 217 <표 7> 재구성

주. 1)실명공간: 열린시장실, 비실명공간: 시민토론방
2)평균조회건수: 주민참여1건당 평균조회건수.

한편, 실명제와 무관하게 운영되었던 시민토론방의 경우, 실명제가 ‘열린시장실’에 대한 실명제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월평균 약 55건이었던 토론방 참여건수가 약 206회로 늘어났다. 그러나 게재된 글을 조회하는 평균 횟수는 급속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실명공간인 ‘시민토론방’에서 글을 게재하거나 조회하는 온라인 참가자들은 실명공간이 형성된 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약 6,258명 대 10,524). 이는 실명공간으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비실명공간으로 급속히 이동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실명공간으로 인해 비실명공간으로 다소의 풍선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명제 전후 분석된 3개월간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거나 조회하는 전체 이용자는 약 절반가까이 줄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온라인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 증대를 지향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는 실명제를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가 일반 웹사이트에 비해 부정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적은 공간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실명제로 커뮤니케이션이 위축됨으로써 민주주의에 미칠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2차 자료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물론, 책임성이 약화되기에 남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을 규제하는 법률을 가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잠재적 위험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익명을 통해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 활동을 통하여 자기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 실현의 수단이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 통치(self-government)의 실현을 도모하는 수단이다(문재완, 2005; 황성기, 2008). 따라서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¹⁾를 함에 있어서도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한다면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협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민주자치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일 수 있다.

1) 이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1호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각종 규제들 외의 선거운동은 제58조 제2항을 통해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은미·이준웅 (2006). 읽기의 재발견: 인터넷 토론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효과, 한국언론학보, 50(4), 65-95.
- 문재완(2005). 익명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4,(2), 135-167.
- 박성희·박은미(2007). 인터넷 공간에서의 이슈 유형별 여론지각과 의견표명에 관한 연구: 인터넷 여론조사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9(가을), 284-323.
- 이시원·민병익 (2002).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한국행정학보, 36(2), 205-229.
- 조소영(2007).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13(1), 41-64.
- 헤럴드경제(2007. 8. 20). 선거법에 얼어붙은 '인터넷 댓글'...해빙 가능할까.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7/08/20/200708200049.asp.
- 황성기 (2008),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법학이론, 25(1), 7-37.
- Antonioni, D. (1994). The effect of feedback accountability on upward appraisal ratings. Personnel Psychology, 47(2), 349-357.
- Balking, J. M., (2004). Digital speech and democratic culture: A theory of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information society,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79(1), 1-55.
- Kling, R., Lee, Y., Teich, A., & Franekl, M. S. (1999). Assessing anonymous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Policy deliberations, The Information Society, 15, 79-90.
- 관련 법률 및 판례 검색 사이트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http://www.eff.org/victories>.
 - Citizen Media Law Project. <http://www.citmedialaw.org>.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http://www.aclu.org>.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②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